

영해 및 접속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341
------------	------

발의연월일 : 2017. 9. 13.

발의자 : 문희상 · 이학영 · 이동섭
민병두 · 김종민 · 김해영
윤호중 · 안민석 · 이춘석
유동수 · 안규백 · 정종섭
설훈 · 신창현 · 이인영
김경협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외국선박이 대한민국의 주권에 대한 위협·무기를 사용한 훈련 등 대한민국의 평화·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대한민국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발한 통항 정지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음. 또한 외국선박이 대한민국의 평화·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행위를 할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 발하는 정선(停船) 등의 조치를 거부·방해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안보 위기 상황에서 외국선박이 대한민국의 평화·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더욱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한민국의 평화·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행위를 하

거나 대한민국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발한 정선(停船)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벌금을 3억원으로 인상하고, 정선(停船) 등의 조치를 거부·방해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벌금을 1억원으로 인상하여 외국선박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더욱 엄격히 처벌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

영해 및 접속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영해 및 접속수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2억 원”을 “3억 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천만 원”을 “1억 원”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